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

-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 (석남 체육공원) -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

-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 (석남 체육공원) -

의안 번호	1140
----------	------

제출연월일 : 2014. 0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1. 제안사유

- 인천 서구지역의 외형적·내적 확대로 인한 체육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생활체육의 다양화 및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등으로 여가·체육 활동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동 및 체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석남동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제공 및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하고 주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충족 및 여가장소 제공을 하고자 “주제공원(체육공원)”으로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을 추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견청취내용

- 시 설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 6-8번지 일원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제안사항
 - 도시계획시설 신설 : 주제공원(체육공원)
 - 결정면적 : 10,200㎡(약3,085평)
- 사업기간 : 2014. 10. ~ 2018. 12.
- 사 업 비 : 5,200백만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추진경위

- 2012. 11. 28. :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2. 12. 03. :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 2013. 10. 07.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입안요청(서구→인천시)
- 2013. 11. 08. :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 2013. 12. 16. : 관련기관(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서구→인천시)
- 2014. 02.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한강유역환경청)
- 2014. 02. 2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조치계획 제출(시→한강유역환경청)

4.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	석남체육공원	체육공원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	-	증)10,200	10,200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석남체육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위치 : 석남동 산6-8번지 일원 -면적 : 10,20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의 석남동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제공 및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하고, 주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충족 및 여가장소 제공을 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을 신설하고자 함

5.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가. 주민 열람·공고

- 열람·공고 기간 : 2013. 11. 11. ~ 11. 25. (14일간)

성명	소유필지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노충희	석남동 산6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부지결정을 반대함 동필지를 포함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부지에 대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한 사항임 	미반영
황해성	석남동 산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토지의 경우 맹지화되어 전체적 토지에 대한 가치하락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부지에 대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한 사항이며, 편입된 토지는 향후 감정평가 실시 후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겠음 	일부 반영

나.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 인천광역시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시계획과	• 의견없음		
환경정책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별도협의		
교통기획과	• 의견없음		
재난관리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별도협의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남배수지 진입도로에는 송·배수관 (D1,350mm, 2열)이 매설되어 있음 • 송·배수관에 누수 등이 발생하면 보수에 장시간(24~72hr)소요되며, 발생장소가 활용구간이면 교통통제로 체육공원 차량 진출입 불가 • 향후 체육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석남배수지 진입도로 활용보다 단독 진출입로 설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석남배수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차량출입계획을 변경하여 남측 중로2-124호 선으로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변경 하였음 	반영

○ 서구청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해당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근지역 우수·토사유출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토사유출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사전에 예방을 하겠음 	반영
도시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환경보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우려가 될 경우 추가적으로 별도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우려가 될 경우 추가적으로 별도대책 강구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엄격한 관리기준 준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엄격한 관리기준 준수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법 인허가를 득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법 인허가를 득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의견이 환경부 협의 시 반영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의견이 환경부 협의 시 반영하겠음 	반영
토지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본 검토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여 그에 따른 저감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세부검토의견을 제시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금회 제시된 세부 검토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후 보완하여 반영·조치토록 하겠음.	반영
·검토보고서 내용 및 제시된 협의의견은 공사시 시공계획(실시설계보고서, 설계서, 시방서 등)에 반영하여 재해예방에 활용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시 현장에 맞는 이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협의조건을 지속 관리하시기 바람.	·본 검토서와 협의의견은 공사시 시공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시행하고,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이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관리토록 하겠음.	반영
·공사기간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과정에서 예측·검토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 지역의 재해영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발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공사과정에서 예측치 못한 사항 및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재해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조속히 실시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사업시행자는 사업 착공전 협의권자에게 재해저감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준공전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사업 착공전 재해저감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준공전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겠음.	반영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이를 반영하고 이행계획서(변경)를 제출하시기 바람.(단,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는 대상은 제외)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이를 반영하고 이행계획서(변경)를 제출하겠음.	반영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조치계획(결과) : 공문에 파일로 첨부, 보완검토서 : 별책으로 제본].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겠음.	반영
·본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본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음.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한강유역 환경청	·본 검토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본 검토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였음.	반영
	·본 사업단계는 공원구역만 결정하는 단계로 향후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행 시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 사업단계는 공원구역만 결정하는 단계로 향후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행 시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1. 동 계획구역 인근에는 가좌여중, 석남배수지, 태화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등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		
	·비산먼지 및 소음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진 또는 방음판넬 설치 추가 및 저소음기계사용 검토 제시	·비산먼지 및 소음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진 또는 방음판넬의 높이를 6m로 강화하였고, 저소음기계사용 검토 제시하였음.	반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제시하고 공사장비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저감방안 제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제시하고 공사장비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저감방안 제시하였음.	반영
	2. 본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본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였음.	반영
	3. 기타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우리부서 검토의견으로 필요시 관련부서(대기, 수질, 하수, 폐기물, 온실가스 등)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대기(온실가스), 수질, 하수, 폐기물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음.	반영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였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검토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였음.	반영
	·본 검토의견 보다 강화된 보전 대책을 강구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 제시	·미반영 없이 전부 반영하였음	반영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량화하여야 함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량화하였음.	반영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등에 대하여 검토·제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공문사본을 부록에 제시하였음.	반영
·본 계획 추진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본 계획 추진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본 협의내용 외 별도의 추가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구청 환경보건과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시 전략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 본 검토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 본 검토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겠음.	반영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엄격한 관리기준 준수 할 것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엄격한 관리기준 준수 할 것임.	반영
	·환경관련법 의거 관련 인·허가를 득할 것	·환경관련법 의거 관련 인·허가를 득할 것임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한강유역 환경청	·본 계획은 공원구역 결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으로, 향후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행 시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 계획은 공원구역 결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으로, 향후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행 시 별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변경) 조건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시설물의 배치계획 등을 바탕으로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하여야 함. - 특히, 사업부지 인근 정온시설 및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진동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는 계획을 수립.	·실시계획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변경) 조건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시설물의 배치계획 등을 바탕으로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하겠음. - 특히, 사업부지 인근 정온시설 및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진동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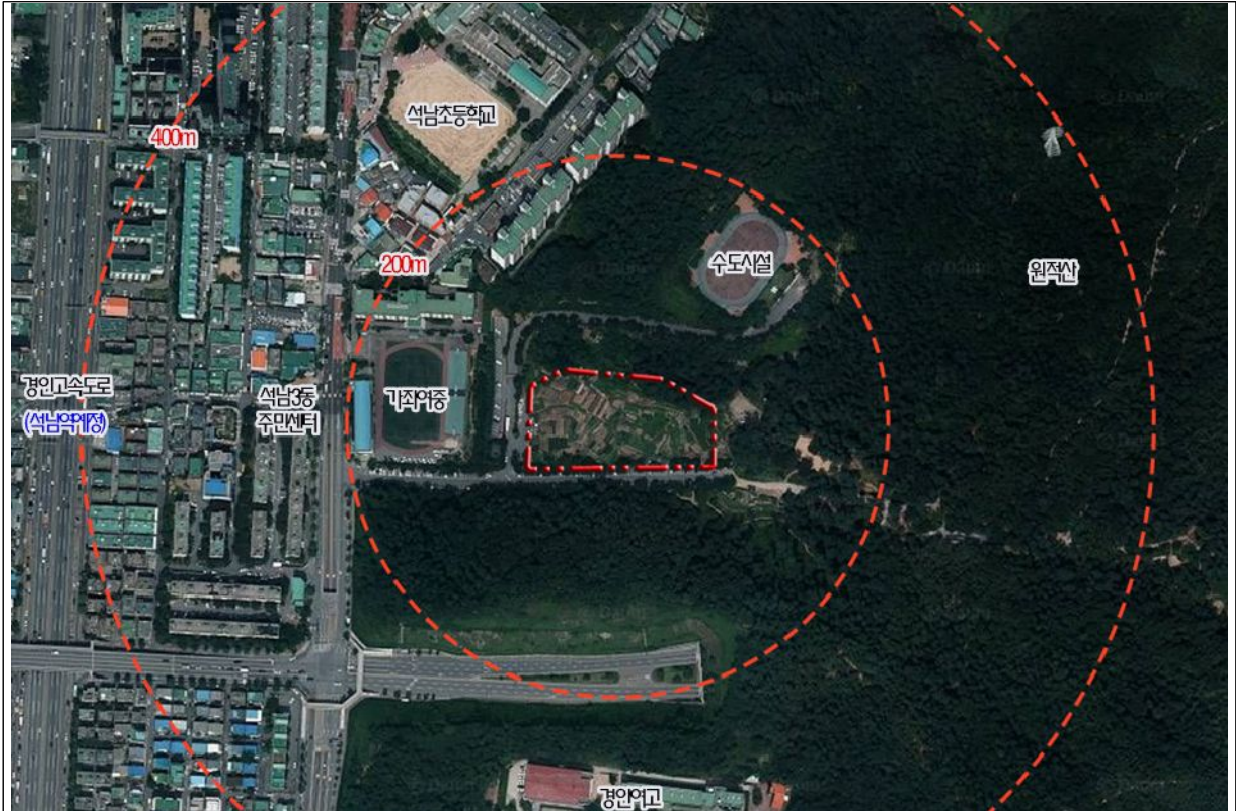
6. 향후 추진계획

- 2014. 0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06.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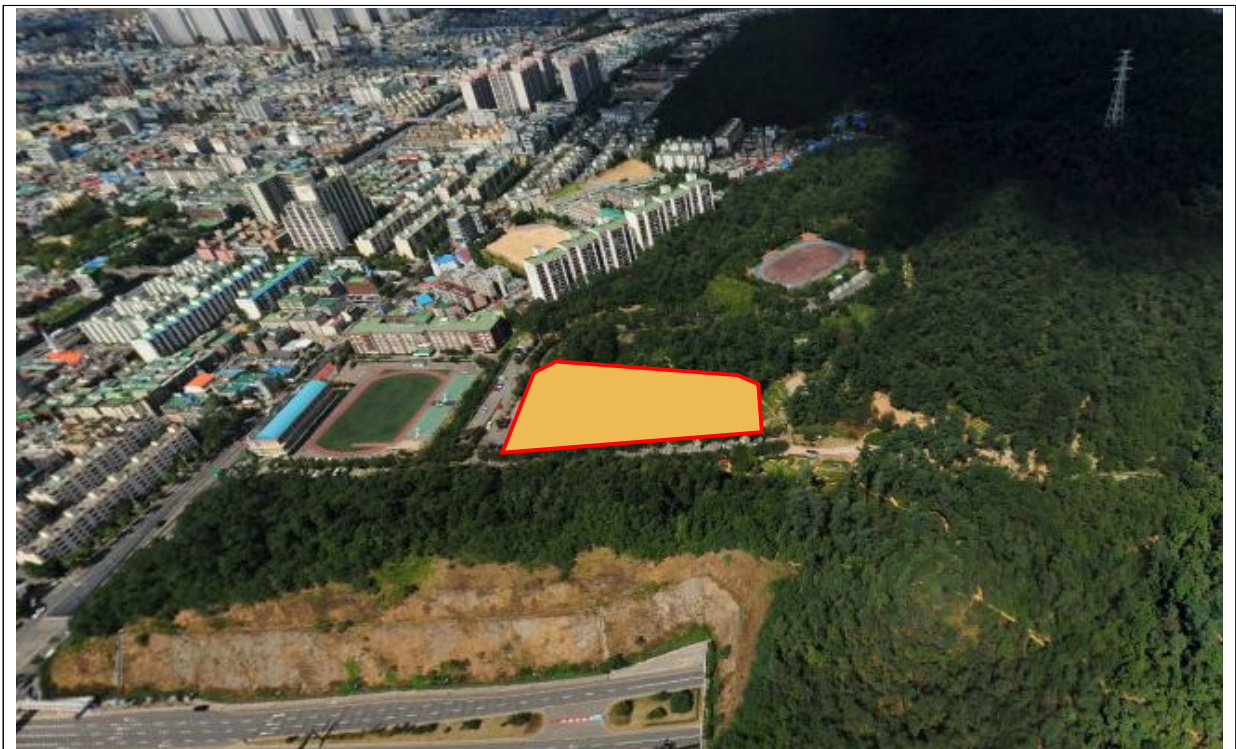
-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1부.
3. 토지이용계획도(안) 1부.
4. 관련법령 검토 1부. 끝.

[붙임 1]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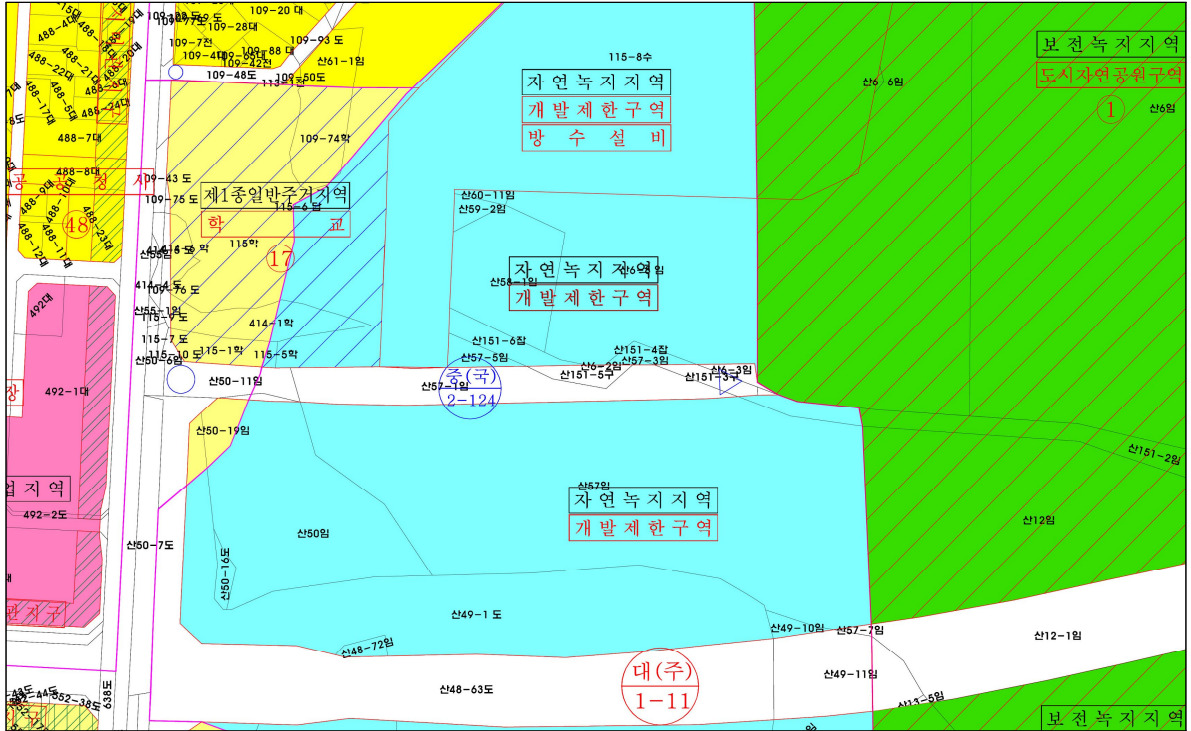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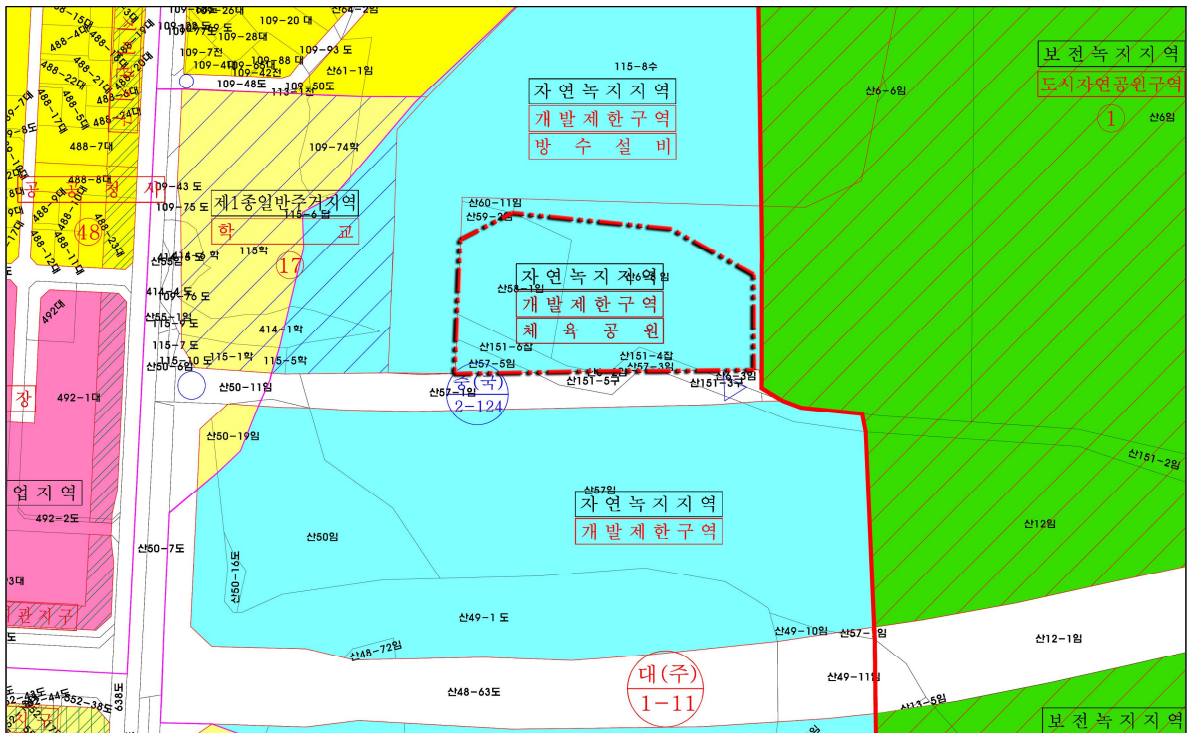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 기 정



○ 변경



[붙임 3]

토지이용계획도(안)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번호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합계	-	10,200	100.0	
족구장	1	403	4.0	2면
풋살구장	2	700	6.9	1면
배드민턴장	3	485	4.8	3면
게이트볼장	4	285	2.8	1면
다목적운동장	5	351	3.4	
간이농구장	6	174	1.7	1면
도로	7	857	8.4	
광장	8	106	1.0	
휴양시설	9	112	1.1	
주차장	10	423	4.1	
관리동	11	100	1.0	
녹지		6,204	60.8	

[붙임 4]

구 분	관 련 법 규 및 내 용	검 토 사 항	비 고
제 안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계획법 제25조 - 관(官)이 입안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6조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서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입안 신청하는 사항임. 	적정
제 안 건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1 - 관(官)이 입안 신청하는 경우 토지주 동의요건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가 서구청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한 사항이므로, 토지 확보 또는 토지주의 동의 불필요 	적정
시 의 회 의 건 청 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 공원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 제외대상 : 소공원, 어린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공원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임 	해당
토 지 적 성 평 가 검 토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1-3-4 - 제외대상 : 공간시설(체육공원, 유원, 묘지공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공원은 토지의적성평가 협의 대상임 	해당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7조[별표2] - 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 m² 미만인 경우 - 그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m²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면적이 자연녹지지역 10,200m²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해당
사 전 재 영 향 성 검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별표1] - 제외대상 :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이 5,000m²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면적이 10,200m²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임 	해당
교 통 영 향 분 석 개 선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 - 도로 : 총길이 5km이상인 노선 - 공원 : 부지면적 30만m²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면적이 10,200m²이므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이 아님. 	해당 없음